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37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4.

발 의 자 : 하태경 · 김세연 · 박인숙
유승민 · 유의동 · 윤재옥
이종구 · 이종배 · 정양석
정운천 · 주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·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·잡지 등 미디어,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서 가짜 뉴스에 취약함.

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·분석·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·분석·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

(안 제90조의2제4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의2제4항제1호 중 “교육·체험”을 “교육(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·분석 및 비판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)·체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p> <p>1. 미디어에 관한 <u>교육·체험 및 홍보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	<p>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교육(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·분석 및 비판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)</u>·체험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